

의안번호	2215178
의 퇴 인	윤상현의원
회 답 일	2025.12.29.
추계번호	25B6758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에 대한 층간소음기준을 정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4,800만원(연평균 1,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평균
층간소음기준 등 (안 제21조의2)	48	-	-	-	-	48	10

주: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준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기준의 설정 방식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으로 공동주택과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 소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1조의2(충간소음기준 등)	○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 및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충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및 분쟁해결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주택법」 제2조제4호¹⁾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에 대한 충간소음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임
-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공동주택 충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충간소음 기준을 토대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충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음

[표 2] 충간소음 관리부처 역할 및 현황

구분		역할	관련법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충간소음 이웃사이센터(한국환경공단)	충간소음 측정, 피해사례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 실시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피해 관련 분쟁 조정 및 피해배상 등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토지주택공사)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를 통해 충간소음 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 또는 상담 지원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충간소음 피해 사실조사, 심의·조정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재 준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기준은 없으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서 수도권 및 광주광역시 소재의 준주택에 대하여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표 3]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운영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코드명)	내역사업	주요 내용	2024	2025	2026
생활공해관리 (1633-321)	소음·진동 관리대책	층간소음 현장진단·측정서비스 제 공 및 층간소음 예방 확산 교육 운 영 등	2,650	2,570	2,390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개정안 부칙과 국회 심의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준주택에 대한 층간소음기준 설정 비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유사 연구용역 실시사례를 참조하여 추계함
 - 기후에너지환경부 의견에 따라 본 추계에서는 준주택에 대한 층간소음기준 설정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유사 연구용역 실시사례를 참고하여 소요비용을 추계함
 -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의 적정성 검토 및 제언 등을 위한 ‘층간소음 갈등해결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연구’에 4,8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준주택에서의 층간소음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용역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연구용역은 추계 첫 해인 2027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표 4] 유사사례 관련 주요내용

(단위: 백만원)

과제명	수행기관	수행기간	계약금액	주요내용
층간소음 갈등해결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7.~12.	48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의 적정성 검토 및 제안 · 현행 층간소음 관리 및 민원 대응체계 조사 · 공동주택 층간소음 적정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 · 층간소음 관리에 대한 「소음·진동관리법」의 역할 및 개선방안 제안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에 대한 층간소음기준을 정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4,800만원(연평균 1,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5]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평균
층간소음기준 등 (안 제21조의2)	48	-	-	-	-	48	10

주: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준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기준의 설정 방식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준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기준의 설정 방식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

[참고자료 1]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개요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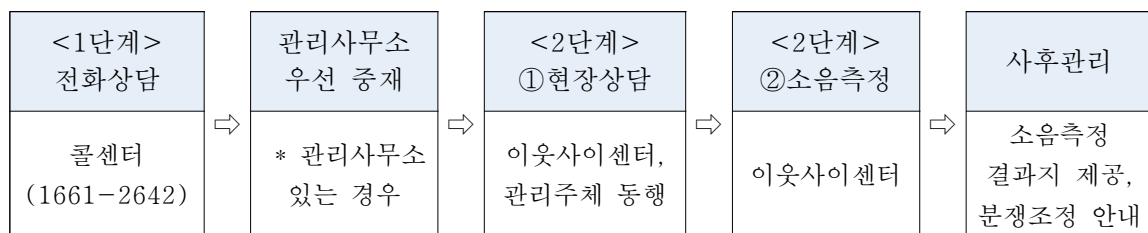
□ 개요

- (운영목적)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해결을 위해 전화·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 간의 갈등 조정·완화 유도
- (근거법령)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사업기간) '12년 ~ 계속
- (운영방법) 한국환경공단 위탁 운영

□ 주요업무

- 층간소음 콜센터(1661-2642) 운영·관리 및 전화상담 서비스
 - 전국 단일번호로 콜센터 전화상담 서비스 제공, 센터 업무절차, 방문상담 등 신청 방법, 층간소음 저감 및 대응요령 등 안내
- 층간소음 측정, 피해사례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
 - 방문상담 후 층간소음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 소음측정, 층간소음 저감물품(슬리퍼·가구패드·도어스토퍼 등) 제공
- 층간소음 자가측정 프로그램 운영(층간소음 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 상담절차 (이웃사이서비스)



[참고자료 2]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처리 현황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단위: 건)

구 분	1단계	2단계(현장진단)				
	전화상담 접수·처리 (콜센터+온라인)	처리대상	처리현황*			
		접수	소계	추가 전화 상담	방문 상담	소음 측정
계	381,457	95,116	94,905	71,001	20,026	3,878
`12년	8,795	1,829	728	351	377	—
`13년	18,524	3,271	2,620	1,396	1,224	—
'14년	20,641	4,465	4,617	2,789	1,747	81
`15년	19,278	4,712	5,000	2,477	2,364	159
`16년	19,495	6,306	5,741	3,380	2,158	203
'17년	22,849	9,226	8,576	6,170	1,997	409
'18년	28,231	10,142	10,294	8,058	1,817	419
'19년	26,257	7,971	9,654	7,447	1,745	462
'20년	42,250	12,139	11,608	10,711	714	183
'21년	46,596	9,211	9,891	8,412	1,088	391
'22년	40,393	7,771	7,609	6,116	1,035	458
'23년	36,435	7,064	7,336	5,708	1,252	376
'24년	33,027	7,033	7,112	5,224	1,420	468
'25년 (7월)	18,686	3,976	4,119	2,762	1,088	269